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노인복지과-15639
등록일자	2016.6.22.
결재일자	2016.6.2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노인지원팀장	노인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		
우정민	강영화	홍경일	전결 06/22 김효길		
협조자					

-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-

2016년 하반기 모범경로당 선정 계획

- 선정시기 : 2016. 6.24 ~ 6.30
- 대 상 : 28개 경로당(164개 경로당 중)
- 선정기준
 - 평균 이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로당
 -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경로당
 - 평가항목 : 경로당 임원에 대한 호응도, 보조금 운영 상태, 프로그램 실적, 급식운영여부, 경로당개방상태, 민원발생 여부
- 선정방법
 - 1차심사 : 각 주민센터에서 1개 경로당 추천
 - ※ 단, 경로당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2개소, 20개 이상인 경우 3개소 추천
 - 2차심사 : 노인복지과 검토 후 확정(동주민센터 의견 적극 반영)
- 인센티브 지원내용 : 하반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월 200,000원 지원(7월~12월) 및 표창

2016.6.

강 남 구
(노인복지과)

-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-

2016년 하반기 모범경로당 선정 계획

관내 모범적인 경로당을 선정하여 인센티브(운영비 보조, 표창 등)를 제공 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1 추진근거

- 노인복지법 제4조 (보건복지 증진의 책임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(상별규정)
- 노인복지과-1281(2016.01.15) 2016년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

2 선정개요

- 선정시기 : 2016.06.24 ~ 06.30
- 선정기준
 - 평균 이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로당
 -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경로당
 - 평가항목 : 경로당 임원에 대한 호응도(20), 보조금 운영 상태(25), 프로그램 실적(20), 급식운영(20), 경로당개방상태(15), 민원발생 여부(-15)
- 선정방법
 - 1차심사 : 각 주민센터에서 1개 경로당 추천
 - ※ 단, 경로당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2개소, 20개 이상인 경우 3개소 추천
 - 2차심사 : 노인복지과 검토 후 확정(동주민센터 의견 적극 반영)
- 인센티브 지원 내용
 - 운영보조금 지급 : 2016.7~12월까지 경로당 운영비를 각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지급
 - 표 창 : 매년 상·하반기 모두 선정된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의 날 또는 강남구지회(정상운영시) 신년하례식때 구청장 표창

□ 세부추진계획

- 2016. 06.28 : 2016년 하반기 모범경로당 선정 제출(동주민센터)
- 2016. 06.30 : 수합 평가표 적정성 검토(노인복지과)
- 2016. 07.01한 : 모범경로당 선정 통보

3 상반기 모범경로당

연번	동주민센터	모범경로당	비고
1	신사동	*****	
2	논현1동	*****	
3	논현2동	*****	
4	압구정동	*****	
5	청담동	*****	
6		*****	
7	삼성1동	*****	
8	삼성2동	*****	
9		*****	
10	대치1동	*****	
11	대치2동	*****	
12	대치4동	*****	
13	역삼1동	*****	
14	역삼2동	*****	
15		*****	
16	도곡1동	*****	
17	도곡2동	*****	
18	개포1동	*****	
19	개포2동	*****	
20	개포4동	*****	
21	일원본동	*****	
22		*****	
23	일원1동	*****	
24	일원2동	*****	
25	수서동	*****	
26	세곡동	*****	
27		*****	
28		*****	

4**소요예산**

- 소요예산 : 200,000원(운영보조금) × 28개소 × 6월 = 33,600,000원
- 예산과목 : 노인복지과, 노인복지증진, 노인복지시설운영및지원, 경로당운영, 민간이전,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

5**추진효과**

- 타 경로당에서 모범경로당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
- 해당 모범경로당 회장 및 임원은 물론 전체 이용 노인의 자긍심 고취

6**행정사항**

- 경로당 운영규정 위반 및 이용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

붙임 : 모범경로당 선정표